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2005.12.31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데 있음.

**주요내용**

-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4조의4)
- 재산세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 (안 제21조)
- 5만원이하 소액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 부과하도록 함 (안 제21조의 3)
-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토지 및 건물은 2015년까지 100%, 주택은 2017년까지 100%로 점차 인상하도록 함 (부칙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5.12.31 개정된 지방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문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안 제21조제1항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는
-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건축물은 동법제111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고 있는바,
- 본 안과 같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제111조제2항제1호로만 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이 없게 될 것이므로
- 안 제21조제1항중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제1호” 는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제2항” 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 부칙 안제1조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법률 조항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와 동법 제187조 및 부칙 제5조를 동법 부칙 제7843호(2005.12.31)제1조(시행일)에 의거 2006.1.1부터 시행하여야 함에도
- 본 부칙안 제1조와 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할 경우 지방세법과 조례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점이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 본 조례안 제21조제1항과 부칙안 제2조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단서로, “단,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 6월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6. 22

보고자 : 김 찬 재

#붙임 : 1.수정의견.  
2.관련법령.

# 수 정 의 건

조 례 안	수 정 의 건
<p>제21조(과세표준)</p> <p>①토자·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b>법제111조제2항제1호</b>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1조(과세표준)</p> <p>①.....            .....<b>법제111조제2항</b>            .....</p>
<p>부칙 제1조(시행일)</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p> <p>.....시행한다.  <b>단, 제21조제1항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과세기준일 2006년6월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b></p>

# 관 련 법 령

## ● 지방세법

- 제69조의2(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채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채납액 등(이하 “채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의 채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채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1조의2(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 가격, 건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191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2005.12.31.개정)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②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5]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5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22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와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